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검 토 보 고 서

2023. 10. .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특례보증)

1. 제안경과

- 본 출연안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4년 출연금 : 2,000백만원
- 사업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으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출연금 개요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단, 보증금지 또는 보증 제한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업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추천
- 출연기관 : (재)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1,500	2,000	2,000

4.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게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명에서 10명(제조, 광업, 건설, 운수) 미만의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출연금 지원 운영 실적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1,500	2,000	2,000
지원실적 (업체/지원액)	603 / 15,486	759 / 21,625	530 / 14,101

※ 2023년도는 8월말 기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